

법령·제도개선 건의사항 목록

서울아리수본부

총 1건 건의

목 록

연 번	건의제목	건의부서
1	상수도원인자부담금제의 법적 기반 강화 및 합리적 운영을 위한 수도법 개정 건의	급수설비과

법령 · 제도개선 건의사항

건의 제목 (건의부서, 건의일자)	건의내용	소관부처
<p>1. 상수도원인자부담금제의 법적 기반 강화 및 합리적 운영을 위한 수도법 개정 건의 (급수설비과, '24. 1. 31.)</p>	<p><input type="checkbox"/>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사업지구 등에 대하여 관련 수도법 등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처분 하였으나, 서울시 등 17개 지자체에서 다수 소송 패소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 판결 요지: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이중 부과에 해당하고, 재량행위로서 전부 또는 일부 공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사업지구 내 사업시행자의 수도시설 설치 공사를 원인 행위로 보고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중복된다고 판단하여 이중 부과로 판결 <p><input type="checkbox"/>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법과 대규모 사업지구 관련 법률과 상호 상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법 제70조(수도설치비용 부담은 수도사업자)와 도시개발법 제54조(사업지구 내 수도시설 사업시행자)의 규정이 수도시설의 설치 의무자의 상충으로 혼란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명확한 규정으로 혼란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로 규정할 뿐, 도시개발법 등에서 사업시행자(사업 주체)가 부담하여 설치하는 사업지구 내 수도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원인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부담금 부과 원칙)에 위배 되어 이중 부과로 판결 - 또한, 수도법 제71조에 근거한 환경부 표준 조례(개정, 2011. 11. 10.)가 원인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명시하지 않음 	<p>(환경부)</p>

건의 제목 (건의부서, 건의일자)	건의내용	소관부처
	<p>□ 건의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의 구체화로 법적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택지지구 등의 수도시설 설치비용 부담에 대한 관련 법률 등을 고려하여 보강 필요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기준, 범위, 대상의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택지지구 등의 수도시설 설치에 대하여 기준을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중 부과 등에 위배 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 -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 유발 비용, 타공사·타행위 및 손괴자 비용의 유형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정의하여 부담할자를 구체적으로 구분 ○ 대규모 개발사업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근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내 설치하여야 하는 기반시설로서의 수도시설과는 별도로 사업구역 외의 수도시설에 대하여 장래 신·증설을 유발함에 따른 부담금 부과 근거 확보 필요 <p>□ 관련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법(제70조, 제71조) ○ 도시개발법(제54조) ○ 수도법시행령(제65조) ○ 환경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2011. 11. 10.)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제2조) ○ 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 	

붙임 1 | 관련 규정

수도법(제70조, 제71조)

제70조(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8.>

도시개발법(제54조)

제54조(비용 부담의 원칙)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수도법 시행령(제65조)

- (제1·2·4항) 부담금 부과 전 사전협의 및 부과 시 고지에 대한 사항
- (제3·5항) 부담금(신·증설 유발/손괴) 구성 항목
- (제6항) 조례 위임: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조례로 정함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 3., 2017. 4. 11.>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1. 3.>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④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 1. 3.>

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 1. 3.>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1. 3.>

□ 환경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2011. 11.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4조 (부담금 부과 대상 및 범위) ①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당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7., 2010.7.15.>

1.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부담금 부과 원칙) ① 부담금은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게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부과권자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12. 29.>